

# 한남대학교 사무직원 신입 채용 공고

사랑과 섬김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,  
한남대학교와 21세기를 함께할 열정이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.

## 1. 채용 분야 및 지원 자격 등

채용 분야		채용 인원	지원 자격	우대사항
행정직/ 기술직 공통		○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</li> <li>■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</li> <li>■ 공무원 임용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</li> <li>■ 세례교인</li> <li>■ 외국어 성적 : 영어 또는 중국어 또는 일본어 공인능력시험 성적으로 대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영어 : TOEIC 750, TOEFL iBT 85, New TEPS 322 이상</li> <li>-중국어 : HSK 5급 197 이상</li> <li>-일본어 : JPT 750 이상, JLPT N1 121</li> </ul> </li> <li>■ 이상 성적 중 1개 제출(온라인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공인성적만 인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</li> <li>■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</li> </ul>
행정직	일반행정	○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통사항 적용</li> </ul>	
	건강관리센터	○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간호학 전공자</li> <li>■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</li> <li>■ 의료기관(병원) 근무 경력자</li> <li>■ 학교 및 산업체 근무 경력자</li> </ul>
기술직	건축	○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</li> <li>■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실무경력 3년 이상자</li> </ul>

## 2. 채용 조건

가. 임용 시기 : 2020. 11. 01. 예정

나. 채용 형태 : 3개월간 수습 직원으로 근무한 후, 직무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으로 임용

### 3. 온라인 지원서 접수

가. 온라인 지원 :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온라인 등록

나. 온라인 지원기간 : 2020. 9. 14.(월) ~ 2020. 9. 17.(목) 15:00시 까지

나. 접수방법 : 워크넷 홈페이지(<http://www.work.go.kr>)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

### 4. 오프라인 제출서류 접수

가. 온라인 지원서류 : 입사지원서 1부, 자기소개서 1부

나. 온라인 제출서류 : 아래의 서류를 스캔하여 **이메일(kwon@hnu.kr)**로 제출

※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지원 시 제출한 서류 원본 제출

※ 지원시 **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등 민감정보가 기재된 서류 제출 불가**, 반드시 뒷자리 삭제하고 제출할 것

※ 외국에서 학위 혹은 경력을 취득한 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전체를 한글로 번역한 후 하단에 서명하여 각 증명서와 함께 제출. 추후 증명서와 번역본에서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채용 혹은 합격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.

#### 1) 필수 제출 서류

구 분	비 고
① 직원 채용 제출서류 목록 1부 (별첨 1. 참조)	본교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
② 세례교인증명서 1부 (별첨 2. 참조)	본교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
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(별첨 2. 참조)	
④ 학위증명서(학사) 1부	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제출
⑤ 학위증명서(석사 이상 학위별) 각 1부	해당자에 한함
⑥ 성적증명서(학사) 1부 - 평점평균(GPA) 및 만점, 백분율 환산점수 기재	
⑦ 성적증명서(석사 이상 학위별) 각 1부 - 평점평균(GPA) 및 만점, 백분율 환산점수 기재	해당자에 한함
⑧ 외국어 공인성적표 사본 1부	온라인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공인성적표만 인정
⑨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부	해당자에 한함
⑩ 해당 분야별 경력(재직)증명서 사본 각 1부 - 근무부서, 직무, 근무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입되어야 함	해당자에 한함

2) 부가 제출서류

구 분	비 고
① 분야별(종목별), IT 관련, 운전면허 등 자격증 사본 각 1부	해당자에 한함
② 관련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	
③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(앞, 뒷면)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	

## 5. 전형방법 및 일정

### 가. 전형방법

전형방법			비 고
1차	서류전형		추후 별도 공지
2차	필기 전형	외국어	제출된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점수로 대체
		논 술	추후 별도 공지
		일반상식	
3차	면접 전형	외국어 회화능력 면접, 실무진 면접, 경영진(신앙) 면접, 심층면접	추후 별도 공지
합격자 발표			각 단계별 합격자는 <a href="http://www.hnu.kr">www.hnu.kr</a> 홈페이지에 공고함

나. 전형 일정 :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한남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

## 6. 기타사항

- 가.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각종 온라인 제출 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나. 필요시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각종 제출 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다.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.
- 라. 지원서 작성 시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.
- 마. 온라인 지원 서류(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)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바.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.
- 사.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에라도 신체검사(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발행)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.

- 아.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채용인원의 일부 또는 전원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자. 공고된 전형 관련 일정 등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변경될 경우 사전에 유선으로 통보하며,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.
- 차. 제출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미채용된 구직자 중 서류 반송 희망자에 한하여 60일 이내 반환 요구가 있을 시 절차에 따라 반송합니다.
- 카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사무처 총무인사팀(☎ 042-629-806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한남대학교 총장

#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발췌 내용)

**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**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“취업지원 대상자”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
2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
3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
4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
5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

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.

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9.15]

**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**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(加點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9.15>

1.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

- 가.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
- 나.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

2.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

- 가.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- 나.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
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,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. 다만,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(換算)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9.15>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9항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9.2.6, 2011.8.4, 2011.9.15>

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·직급·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8.3.28]